



농림축산식품부

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에 따른 가축 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알림

1.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,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일시 이동중지 명령과 관련됩니다.
2. '19.10.1일 경기 파주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추가 발생되어, 우리부는 확산방지를 위해 경기, 강원, 인천소재 돼지농장, 관련 종사자 및 출입차량 등에 대하여 '19년 10월 2일 03:30부터 10월 4일 03:30시까지(48시간) 『가축 등의 일시 이동중지』 명령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.

* 일시이동중지는 2019.10.2. 03:3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 적용시기는 2019.10.2. 05:30부터 실시

3. 이번에 발동되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 및 이동제한조치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또는 전파 가능성이 있는 가축 및 사람·차량 등의 이동을 중지(제한)한 상태에서 일제 세척 및 소독함으로써 아프리카돼지열병 위험요인을 최대한 제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.
4. 따라서, 관련기관 및 협회(단체), 계열사 등에서는 이번 조치를 통해 달성하려는 차단방역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불임에 따른 조치사항을 적극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.

*** 가축운반차량(돼지)은 생축의 상처 유무와 상관없이 모두 이동중지 대상**

5. 또한, 일시 이동중지 및 이동제한 명령을 이행하는 중 부득이한 상황의 발생으로 인해 이동할 필요가 있을 경우,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승인 신청에 따라 승인 증명서를 발급하시기 바라며 '사료차량'의 경우 아래 요령에 따라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 사료차량 이동승인서 발급요령 >

- (이동승인서 신청) 사료가 없는 불가피 한 경우에만 '농장주'가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신청(신청시 사료가 없음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나 사진 제출)
- (이동승인서 발급)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은 제출된 서류 등을 검토하여 **사료가 없음 이 확인될 경우에만 이동승인서 농장주에게 발급(일괄발급 금지)**

6. 우리 부(농림축산검역본부),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지자체 조치사항 및 일시 이동중지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으로, 관련 기관에서는 점검반 구성 및 해당 인원의 복무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경기,강원,인천(시도·시군구)

-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 설치 및 축산관련 차량의 이동중지(제한) 이행여부 점검
 - 시군구에서는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이행상황 확인 후 시·도 상황실 또는 동물방역과(축산과)에 결과 제출(1회/일), 해당 시·도는 관할 시·군·구에서의 이행사항을 집계하여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(fmdai@korea.kr)에 제출(1회/일, 매24시간마다)
- 거점소독장소 지정 : 신규 설치 또는 기존시설을 활용하거나 지자체 보유 소독차량, 소방차량 등을 이용한 임시 거점소독장소를 설치하고 일시 이동중지(제한) 시행전축산차량에 대한 세척·소독 실시
- 축산차량이 돼지 관련 축산시설을 방문하였는지 여부를 KAHIS의 축산차량등록시스템의 GPS 정보를 활용하여 점검하고,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는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는 행정 조치
 - 시·도(시·군·구) 방역담당자는 사전에 검역본부(방역감시과)에 KAHIS조회를 위한 권한 부여 요청 및 권한을 받아 돌 것
- 지자체는 자체 점검반을 구성하고 점검계획을 마련하여 축산농가, 축산관계시설(도축장, 사료공장, 분뇨처리시설 등), 종돈장 등에 대하여 점검
-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의5(일시 이동중지 명령)제4항에 따라 상황전파 및 공고문 게재 등 조치
- 사료차량(지대사료 등)은 반드시 농가방문 후 거점소독 및 소독필증 발급후 다른 농가 방문토록 지도 철저

나. 국방부 및 경찰청

- 지자체가 설치하는 이동통제초소 운영 지원 및 축산관련 차량 이동중지 실시여부 단속 협조
 - 각 지자체는 관할지역 군부대 및 경찰청에 사전 지원 및 협조 요청

다. 농림축산검역본부

- 우리부와 합동점검반 구성하여 지자체 조치사항 및 이동중지(제한) 이행상황 점검
- 지자체가 KAHIS의 축산차량등록시스템 GPS 정보를 활용하여 축산시설을 출입하는 축산차량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도록 사전에 각 지자체(시·도 및시·군·구)에 KAHIS 조회 권한 부여
 - 지자체(시·도, 시·군·구)는 사전에 KAHIS의 GPS 검색 권한 요청
- 지자체와는 별도로 돼지 관련 축산시설에 대하여 축산차량의 출입여부를 지역별, 시간대별로 점검
 - 이동중지 해제 후 지자체 실적과 비교·분석 및 지자체의 행정조치 여부 확인하고, 미흡사항에 대하여 시정토록 조치한 후 그 결과를 10.10(목)일까지 농식품부(구제역방역과)에 제출

- GPS를 장착한 차량 및 명령 대상자에게 일시 이동중지 및 이동제한 명령 시행과 관련된 내용 SMS 등을 활용한 안내

< 예시 >

- * 시행 전 : 10월2일 03:30부터 10월4일 03:30까지 경기, 강원, 인천 일시 이동중지 및 이동제한 조치가 실시될 예정이오니 동 조치가 시행되기 전에 거점소독장소에서 세척·소독하고, 주차 장소에 주차한 후 이동중지토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 거점소독장소는 가까운 시·군 방역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- * 시행 중 : 10월2일 03:30부터 10월4일 03:30까지 전국 일시 이동중지 및 이동제한이 실시되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 가축, 축산관련 사람, 차량 등의 이동이 제한됩니다.

라. 농협중앙회

- 공동방제단을 이용하여 주요도로 및 방역취약지(소규모 농가 등)에 대한 일제 세척·소독
 - 농협중앙회(축산방역부)에서는 매일 소독 실적을 취합하여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(fmdai@korea.kr)에 제출

마. 한돈 협회, 농협중앙회 및 계열화사업자

- 소속 회원농가에 대한 이동중지 및 이동제한 명령을 준수하고, 소유 차량(GPS 미등록 자가용포함) 및 농가에 대한 세척·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안내·홍보(SMS 발송 등) 실시
 - 각 협회 및 계열화사업자는 회원(소속) 농가를 대상으로 시간대 별로 SMS/MMS 등을 통해 홍보하고 그 실적을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(fmdai@korea.kr)에 제출(1회/일, 매24시간마다)

- 붙임 1.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공고문 1부.
2. 일시 이동중지(Standstill) 운영계획 1부. 끝.

